

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[2007. 10. 5]
규칙 제126호
전부개정 2015. 12. 31 규칙 제289호
(제명개정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탁운영 신청) 「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5조에 따라 증평군 노인복지관(이하 “복지관”이라 한다)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증평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조(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)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 중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, 허가 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서에 따라 통보하고,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대장에 기재·관리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.

제4조(대장 비치 및 관리) 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대장을 비치하고,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대장 비치 및 기록·관리를 하여야 한다.

부칙(2015. 12. 31 규칙 제289호 전부개정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3호서식]

시설 사용허가서

허 가 번 호				
사 용 자	유 형 별	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단체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		
	법인·단체명			
	소재지(주소)		전화번호	
	대표자(성명)		생년월일	
사 용 구 분	기 본 시 설	강 당		
	부속시설장비	<input type="checkbox"/> 조명 <input type="checkbox"/> 방송시설 <input type="checkbox"/> 빔 프로젝트 <input type="checkbox"/> 냉·난방시설		
사 용 기 간				
사 용 목 적				
행 사 내 용				
사 용 료				
허 가 조 건		1.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·멸실 또는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했을 경우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. 2.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·정지할 수 있다.		
비 고				

「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.

년 월 일

증 평 군 수

[별지 제4호서식]

시설 사용허가대장

허가 번호	허 가 연월일	사용자 인적사항			허 가 내 용			비고
		성 명 (단체명)	주 소	연락처	시설명	사용 기간	사용 목적	